

춘천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53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변론 종결 2019. 7. 3.

판결 선고 2019. 8. 28.

제 1 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8. 29. 선고 2017가단23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6.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7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오히려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종중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6행부터 4행의 '갑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H대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H대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2007. 9.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등을 제정하는 등의 조직행위는 이미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원고 종중을 명백하게 표시하여 대외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조직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원고가 인위적으로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⑨ 원고의 종중규약 제3조에서는 원고 종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 규약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이고, 위 규약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결의로 추인한 2017년정기총회에서 무효인 위 조항에 의거하여 만 20세 이상의 남자 종중원에게만 총회 참석을 허용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11행의 '증인 G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H대총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11행의 '원고는'과 '관례에 따라' 사이에 '2007. 9. 29.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흥호, 판사 지예현, 판사 고철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횡성군 Q 임야 11,603㎡
2. 강원도 횡성군 R 임야 496㎡, 끝.